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57
-----------	-----

2019년 3월 6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월 30일, 권순선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3. 상정일자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3월 6일 상정·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순선 의원)

1. 제안이유

○ 교육감 사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교육감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의2).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30일 권순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57호로 발의되어 2019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sup>1)</sup>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up>2)</sup>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2) 「지방자치법」 제104조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이 조례나 교육 규칙으로 교육감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교육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민주성, 객관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와 교육감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는 것인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민간위탁 제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민주역사체험올레길 사업,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마을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등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sup>3)</sup>

- 다만 기존의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측면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관여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통제장치의 부재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는 법령해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법제처 2009. 7. 3. 회신 09-0194 해석례).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가 교육감의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

3) 2018~2019년 민간위탁 현황은 [붙임]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받도록 규정함은 물론 동의의 유효기관을 규정한 것은 민간위탁의 공정성, 투명성,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 등을 향상시켜 시민의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조례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0, 2019.2.1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의 요지 :**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재동의 기간을 조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7
----------	-----------

제안연월일 : 2019년 3월 6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I. 수정이유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재동의 기간을 조정함.

## II.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재동의 기간을 5년으로 함  
(안 제4조의2).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제2항 중 “7년”을 “5년”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p>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b>7년</b>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p>	<p>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b>5년</b>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align="center"><u>&lt;신 설&gt;</u></p>	<p>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p>